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명,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구분	2018.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	증감률
○ 사망자수	2,142	1,957	185	9.5
- 사고 사망자수	971	964	7	0.7
- 질병 사망자수	1,171	993	178	17.9
○ 사망만인율	1.12	1.05	0.07	6.7
- 사고 사망만인율	0.51	0.52	-0.01	-1.9
- 질병 사망만인율	0.61	0.54	0.07	13

표 1 2018 산재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평가에 따르면, 사고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 중심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해왔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 사망이 증가했고, ▲이전 년도에 사망했지만 유족급여를 뒤늦게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어, 당해연도 발생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는 2018년을 ‘산재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산재사고사망 감소 원년으로 삼겠다던 포부에 비하면 부실한 평가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라는 개념까지 들이대며 ‘사실은 산재사고사망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노동부가 사망자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들 정도다. (ILO 등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를 ‘치명적 산재사고(fatal occupational injury)’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이런 뜻도 아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산재 인정 사고 사망이 늘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의 산재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꾸준한 문제제기가 옳았다는 방증이다. 2018년 산재 적용이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는데, 만일 산재 적용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죽음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서 빠졌을 것이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산재로 승인되어 통계에 포함되고, 예방 정책 수립의 자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이 돌아갔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부 산재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로 돼 있어, 산재보험 외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및 어선원·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자들의 산재는 포괄하지 않는다. 날로 늘어난다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일부만 특례로 적용받는다. 가구 내 고용이나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다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상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노동 현장 전반에서 일로 인한 사망과 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오히려 이들 통계까지 포함하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책의 우선순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다양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재사고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은 반복되지만, 늘,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OECD에서 산재사고사망률이 1위일 뿐 아니라, 이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세 배 정도 되는 독보적인 수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산재사고사망률은 십만명당 7.3 명으로 OECD 평균 2.6 명이었다. 이는 산재 보험이 포괄하는 노동자가 천팔백만명 정도라고 했을 때, 사고 사망률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1년에 800여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애초 정부(안전공단)가 목표했던 대로 2018년 사고사망만 인율이 8% 감소되었다면 5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건졌을 것이다. 책상 위의 통계 수치는 실상 구체적인 노동자의 죽음과 그로 인해 영원히 닫혀버리는 한 우주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산재사고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는 것도 분명한 이 때, 사고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한 변명보다, 차라리 2018년부터 해온 추락사고 예방 중심, 건설업 안전 비계 설치 중심의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과 진지한 평가가 제출되었어야 한다. 2018년 5월 이후 사업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만으로는,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 건수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외에, 추락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방활동이 앞으로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살필 수가 없다. 연말에 정식으로 2018 산업재해분석이 발표될 때는, 늘 해오던 분석 외에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함께 제출되어 실제 재해 예방 활동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사망재해 예방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비계를 지원하여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좁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접근이다. 사고 사망이 매우 높은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접근이 효과를 일부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단순한 인적 오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 문화’ 부재 및 시스템 실패와 관련성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기술적 접근만으로 사고사망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원청이나 실사용주의 책임성 강화, 실질적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부여, 안전에 최상위 가치를 부여한다는 기업들의 명시적 선언과 이에 걸맞는 실천 등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더 시급한 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공단에서 2018년 제출했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가 “산업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적 접근 외에 이런 거시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구분	2018.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률
○ 재해자수	102,305	89,848	12,457	13.9
- 사고 재해자수	90,832	80,665	10,167	12.6
- 질병 재해자수	11,473	9,183	2,290	24.9
○ 재해율	0.54	0.48	0.06	12.5
- 사고 재해율	0.48	0.43	0.05	11.6
- 질병 발생률	0.06	0.05	0.01	20
○ 근로자수	19,073,438	18,560,142	513,296	2.8

표 2 2018 산재 재해자수와 재해율(고용노동부)

사망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수 역시 102,305명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질병재해자수가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으로 노동자들의 전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 많은 노동자가 더 쉽게 산재로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이다. 오히려 재해자수는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우리라고 본다. 산재사고사망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데도 재해율이 5분의1에 불과한 것은 사망사고 이외의 여러 산업재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망사고 이외의 여러 산업재해가 산재로 승인되기까지는 여러 문턱이 있다. 사업주 확인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여전히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산재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근본적으로 사고나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후,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 자체의 불편함과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승인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추정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공상 등으로 해결하는 노동자도 있다. 평균임금의 70%라는 휴업급여 수준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산재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며,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급하게 복귀하는 압력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승인율을 높이는 것 외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접근성 보장,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 확보, 요양의 질과 급여의 적정성 등 다양한 견지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구 분	직업병								작업관련성질환						
	소계	진폐	난청	금속중독	및 속중독	유기 화합 물중독	기타 화합 물중독	기타	소계	뇌 심 혈 관 질 환	근골격계질환				기타
											신체부 담 작업	요통	사고성 요통	기타	
2018. 1~12 월	계	3,368	1,451	1,414	2	12	84	405	8,105	1,153	3,322	1,210	2,071	112	237
	요양자	2,740	996	1,414	1	6	57	266	7,562	696	3,322	1,210	2,071	112	151
	사망자	628	455	0	1	6	27	139	543	457	0	0	0	0	86
전 년 동 기	계	3,054	1,553	1,051	19	16	69	346	6,129	775	2,436	891	1,747	121	159
	요양자	2,472	1,114	1,051	18	10	42	237	5,718	421	2,436	891	1,747	121	102
	사망자	582	439	0	1	6	27	109	411	354	0	0	0	0	57
증감	계	314	-102	363	-17	-4	15	59	1,976	378	886	319	324	-9	78
	요양자	268	-118	363	-17	-4	15	29	1,844	275	886	319	324	-9	49
	사망자	46	16	0	0	0	0	30	132	103	0	0	0	0	29

표 3 2018 질병종류별 질병재해 현황(고용노동부, 일부 수정)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산재를 발굴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 재해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진폐와 난청을 제외한 직업병 산재는 400여건에 불과하고 이 중 직업성 암이 205건이다.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을 제외한 직업관련성질환은 2018년에도 237명 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한 연구를 인용해, 지구적으로 하루에 약 1,000 명이 사고성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6,500명이 업무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추산했다. 이미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관련 질병의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특히 이른바 ‘발전국가’에서는 이 부담이 더 높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무관련 사망 중 암이 50%, 순환기계질환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산재사고는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이에 비하면 전체 사망재해 중 산재사고사망 비율이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해자 중에는 사고재해자가 89%를 차지하는 현재 한국의 산재 통계는, 드러난 산재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산재 신청과 승인을 늘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양한 직업성 암, 직업성 피부질환, 업무상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인식을 높이고,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 자료가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살의 경우, 한 해 100건 미만이 산재로 승인될 뿐이지만,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업무를 이유로 하는 자살이 매년 500건 내외로 발생한다. 한국과 과로나 직장 괴롭힘 문화가 유사하고 먼저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그러나 자살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일본의 경우, 연 2000여명이 과로자살(업무상 정신질환 승인 중 자살 사례)로 산재 승인받고 있다. 이 숫자는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산재 승인 건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2018년 한국 뇌심질환 사망자가 457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일터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례 중 산재로 포착되지 않는 규모가 매우 크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산재 통계가 매년 똑같은 구성으로, 심층 분석 없이 성별, 지역별, 규모별, 사고유형별 재해자/사망자 숫자와 재해율/사망률을 제시하는 것의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관련된 심층 분석, 산재보험 특례 적용 노동자 가입율, 신청율, 승인율 등과 관련한 분석, 새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과로사 혹은 과로자살과 관련된 심층 분석 등이 제시되어야 산재 예방정책과 연결되는 산재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매년 똑같이 제시되는 산재 통계만으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를 일부 챙겨볼 수 있다. 이미 매년 제출되는 결과임에도 산재 예방정책으로 제대로 다루지지 못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다.

구 분	근로자수	사고재해		질병재해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 계	19,073,438	90,832	0.48	11,473	0.06
		971	0.51	1,171	0.61
5인 미만	3,030,676	30,624	1.01	1,944	0.06
		322	1.06	157	0.52
5인 ~ 49인	8,306,786	43,485	0.52	4,069	0.05
		423	0.51	383	0.46
50인 ~ 99인	1,971,076	6,185	0.31	931	0.05
		53	0.27	117	0.59
100인 ~ 299인	2,510,402	5,857	0.23	1,360	0.05
		104	0.41	191	0.76
300인 ~ 999인	1,701,468	2,781	0.16	1,719	0.10
		46	0.27	243	1.43
1,000인 이상	1,553,030	1,900	0.12	1,450	0.09
		23	0.15	80	0.52

표 4 2018 규모별 사고재해, 질병재해(고용노동부)

2017년	보험 대상 근로자 중 비율	사고재해자 중 비율	사고 사망자 중 비율	질병재해자 중 비율	질병 사망자 중 비율
5인 미만	15.2	34.7	30.3	17.2	12.5
5인~49인	43.5	49.1	46.1	36.0	29.0
50인~99인	10.4	6.7	8.0	7.6	11.4
100인~299인	13.5	5.5	8.8	10.9	16.1
300인~999인	9.2	2.4	4.9	13.4	23.8
1000인 이상	8.4	1.7	2.0	14.8	7.3
2018년	보험 대상 근로자 중 비율	사고재해자 중 비율	사고 사망자 중 비율	질병재해자 중 비율	질병 사망자 중 비율
5인 미만	15.9	33.7	33.2	16.9	13.4
5인~49인	43.6	47.9	43.6	35.5	32.7
50인~99인	10.3	6.8	5.5	8.1	10.0
100인~299인	13.2	6.4	10.7	11.9	16.3
300인~999인	8.9	3.1	4.7	15.0	20.8
1000인 이상	8.1	2.1	2.4	12.6	6.8

표 5 2017년, 2018년 규모별 사고재해 및 질병 재해 규모별 비율(%)

2018년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전체 노동자 중 15.9%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고재해자 중 33.7%, 사고 사망자 중 33.2%를 차지했다. 보험 대상 노동자 비율도 높아 지긴 했지만, 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더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질병재해자나 사망자 중 비율은 사고 재해자, 사고사망자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직업병이나 업무상 질병 산재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17년과 비교해 사고든 질병이든 사망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높아졌지만, 재해자 중 비율은 감소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증가나 승인을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 오히려 산재 보상에서의 불평등은 더 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8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발표하면서,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곧바로 산재 예방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새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되고 나서도 남아 있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넘기 어렵게 느껴지는 다양한 장애물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풀기 어려운 숙제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 숙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노동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조항이 많다. 노동자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인 노동시간과 휴식에 관련된 조항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및 규정 전체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중대재해라도 발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과 기술 지원을 마주칠 일도 없다. 300만개가 넘는 사업체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기에 정부 역량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강 관리를 위해 설립된 근로자건강센터의 활동은 주로 직접 방문한 내원객의 개별 질환 관리에 맞춰져 있으며, 사업장 보건관리 등은 민간업체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설립 9년째인 지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사망자의 76.8%, 사고 재해자의 81.6%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참담한 산재 통계를 매년 내놓으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실질적인 기술 지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이 노동부의 정책 현실이다.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 2019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역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대책의 초점은 역시 계속해서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이다. 특정한 재해 원인을 개선 우선 순위에 두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한다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이런 입장 천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다양한 규율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안 그래도 재계는 ‘600개가 넘는 조항을 어떻게 다 지키라는 것이냐’며 자주 산업안전보건법 흔들기를 시도한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처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산안법 위반 상황은 정상 상황인 것처럼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중대재해 발생 후 특별근로감독에서 몇 천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에 대해 ‘저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경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든지,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발생할 동안 감독과 단속은 없었느냐’고 묻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나서 ‘산안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력화하고, 현장에 법과 제도에 대한 냉소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

게다가 ‘사망사고 위험유발요인’ 중심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사항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어진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보호장비 착용도 중요하다. 보호장비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고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

호구 착용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사업장의 안전 문화와 안전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감독을 줄이면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노동자의 보호장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은 노동부의 산재 예방 정책이 ‘안전한 일터’를 가리키기보다, ‘사고사망을 저감’에만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물론 일상적인 점검과 기술 지원 없이 사고가 났을 때에만 온갖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내는 이전의 감독 관행이 산재 은폐의 동기가 된다는 지적도 옳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만 찾아가서 생색내기 용으로 실시하는 점검 대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안내나 지원 없이 과태료나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 대신, 일상적으로 예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감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 감독과 지원의 범위는 ‘사망사고 위험유발요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감독관 등 인력 확충과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노동부 역시 건설업 추락집중단속기간을 늘리고,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작업발판 사용이 확산되도록 지원책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활동이 현실화 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감독 인력 확충,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우리의 목표는 산재 통계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일터의 안전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2018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통계 수치를 낮추는 데 더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

산재 예방 정책의 중요성과 무거움을 강조했지만, 시기별로 목표로 삼는 산재사망율 혹은 재해 발생율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효율성, 이윤 등을 중시하는 관행이 쉽사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08~2012년 5년간의 제1차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의 목표 중 하나였던 “근골격계 질환에서 근로손실일수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질병의 잠복기가 길어 5년 이내에 성과를 거두

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2013~2017년의 2차 전략 시기에는 근골격계 분야의 목표를 노동에서 기인한 건강위험성 및 질환 감소에 두되, 기업 및 사업장에서 예방문화를 개발하고 취업자 및 피보험자의 건강권을 촉진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정부에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는 것이다.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매년 OECD 최고의 산재사망사고율을 내놓고 이 숫자에만 집착하는 대신, 정말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는 어떻게 가능할지 아주 근본적으로 고민하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산재 발생현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산재 사망률도 줄어 들고 일터도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것이다.